

中小企業의 技術開發

金潤錫

〈商工部 織維生活工業局 事務官〉

〈차례〉

1. 中小企業과 技術革新

- 가. 序
- 나. 技術革新에서 中小企業의 役割
- 다. 技術集約的 中小企業과 技術革新

2. 技術開發 支援制度 現況과 問題點

- 가. 租稅支援制度 現況
 - (1) 技術開發準備金制度
 - (2) 技術 및 人力開發費에 對한 稅額控除
 - (3) 新技術企業化事業 등에 對한 投資控除
 - (4) 外國人 技術者에 對한 所得稅 免除
 - (5) 技術開發機關에 對한 租稅支援
- 나. 租稅支援制度 문제점

3. 結語

1. 中小企業과 技術革新

가. 序

1970年代 들어서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와 美國產業의 競爭力喪失에 依하여 EC 및 日本이 經濟強國으로 登場하는 等 世界經濟版圖가 再編되는 한편 소위 新興工業國으로 불리우는 一群의 開途國들이 自國環境에서 比較優位를 點하는 特定產業에서 先進國의 強力한 競爭者로 부상함에 따라 世界經濟構造와 國際分業構造는 急速한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國際環境의 變化는 先進國과 開途國間 市場競爭을 더욱 尖銳化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先進國 및 開途國은 이와같은 狀況에 對應하여 生產性向上 및 國際競爭力を 強化하는 突破口로서 技術革新을 強調하고 있다. 즉 既存產業의 生產性向上 및 品質管理를 通한 高附加價值化, 尖端技術과의 接

合, 그리고 技術·知識集約的產業의 育成을 爲해 各國은 이른바 「Needs指向의 技術開發戰略」을 推進하고 있다.

中小企業은 國民經濟에서 遂行하는 役割이 至大하며 歷史的으로도 革新的 技術의 應用에 彈力的으로 對應하여 그 成果를 빠르게 企業化하는 等 絶對的인 寄與를 해왔으며 企業內部의 組織特性이나 產業構造上 位置에서 볼때 技術革新의 震源地로서 產業技術의 普及 및 擴散의 媒介體로서 그 役割이 強調되고 있다. 大体로 中小企業들은 傳統的 產業을 基盤으로 하여 技術集約的인 加工產業에서 專門的 技術을 가지고 固有한 市場을 確保하고 있으며 特히 新產業創出에 決定的인 役割을遂行하고 있고 아울러 雇傭吸收나 競爭促進에 크게 寄與하는 等 國民經濟의 根幹으로 그 役割은 莫重하다고 하겠다.

最近 들어 技術革新의 潮流는 從來 中小企業 主準에서 大企業 主導로 轉換되는 樣相을 보여주고 있으나 中小企業들은 如前히 既存技術을 應用하여 그 成果를 國民經濟에 擴散함으로서 技術革新의 過程과 活動에 있어 重要한 媒介체로서 役割을 充實히 履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와 같은 新技術의 創出에 그 一翼을 擔當하고 있다. 特히 產業發展이 流動的 狀態에 있는 新產業 分野에서 技術集約的인 中小企業의 役割은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이 胎動段階에 있는 新產業 分野는 아직 市場規模가 작고 그 將來도 매우 不確實하기 때문에 적은 費用으로 機動力 있게 技術開發을 推進하는 中小企業에 매우有利한 標的目標가 되고 있다.

나. 技術革新에서 中小企業의 役割

우리 나라에서 中小企業의 相對的 不利益은 우리나라 產業에 여러 가지 構造的 不均衡과 脆弱性을 招來하였다. 特히 技術革新에서 中小企業은 大企業 못지 않게 重要할 뿐만 아니라 經營組織 및 技術的側面에서 많은 利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中小企業의 育成은 매우 重要한 課題이다. 技術革新과 關聯하여 中小企業이 遂行하는 重要한 役割은 다음과 같이 指適될 수 있다.

첫째, 中小企業은 技術革新의 主要 源泉으로 改良이나 模倣型보다는 劃期的인 技術革新에 對한 寄與度가 높다는 것이다. (表 1)에서 보듯이

〈表 1〉 OECD主要國의 企業規模別 主要技術革新의 構成

| 國 別 | 小企業 | 中企業 | 大企業 | 合 計 |
|-----|----------|---------|----------|-----------|
| 美 國 | 90(35%) | 37(15%) | 129(50%) | 246(100%) |
| 英 國 | 8(23%) | 3(8%) | 23(67%) | 34(100%) |
| 西 獨 | 5(26%) | 2(10%) | 12(64%) | 19(100%) |
| 日 本 | 1(4%) | 4(16%) | 20(80%) | 25(100%) |
| 프랑스 | 5(31%) | 4(26%) | 7(43%) | 16(100%) |
| 合 計 | 105(31%) | 50(14%) | 191(54%) | 350(100%) |

註) 小企業은 賣出額 5百萬달러以下, 中小企業은 賣出額 5百萬~5千萬달러, 大企業은 5千萬달러 以上을 기準

OECD 5個國을 對象으로 1953年부터 73年까지 市場에 導入된 主要技術革新을 調査한 研究結果에 依하면 이들革新의 件數面에서 中小企業의 比重이 45%나 되고 있어 中小企業이 技術革新에서 大企業 못지 않게 寄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히 美國의 경우 中小企業의 寄與度가 50%인데 比하여 日本의 경우는 大企業이 80%를 차지하여 對照的인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國家別 技術革新의 類型은 〈表 2〉에서 보듯이 大體로 中小企業은 改良이나 模倣型 技術보다 劃期的인 技術革新이나 主要技術進步에 對한 寄與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美國의 경우에 中小企業의 役割이 두드러진 反面 日本은 모든 刑態의 技術革新에 있어 大企業이 壓倒的으로 많아 大企業 主導에 依하여 技術革新轉略을 遂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2〉 OECD主要國의 企業規模別 技術革新類型

| 類型別 國別 | 劃期的技術革新 | | 主要技術進步 | | 改 良 | | 模 倣 | |
|-----------|---------|-----|--------|-----|------|-----|------|-----|
| | 中小企業 | 大企業 | 中小企業 | 大企業 | 中小企業 | 大企業 | 中小企業 | 大企業 |
| 美 國 | 33 | 30 | 38 | 33 | 49 | 48 | 1 | 1 |
| 英 國 | 8 | 13 | 3 | 8 | 0 | 8 | 0 | 0 |
| 西 獨 | 1 | 2 | 3 | 6 | 3 | 3 | 0 | 1 |
| 프랑스 | 2 | 1 | 6 | 5 | 1 | 1 | 0 | 0 |
| 日 本 | 0 | 2 | 2 | 11 | 3 | 6 | 0 | 0 |

資料: National Science Foundation, Indicators of International trends in technology Innovation, Washington, 1976.

둘째, 중소기업의 技術革新은 流動期에서의 技術革新이 支配的이라는 點이다. JM Utterbeck 은 製品開發에 있어 流動期에 있는企業과 成熟期에 있는企業으로 區分하고 流動期에 있어서는 製品革新이 支配的이며 價格보다는 性能을 土台로 하여 競爭하며 企業組織도 体系化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比較的 豐富한 技術人力을 利用하여 汎用的 生產技術이 採擇된다고 보았다.^{註1)}

反面 製品이 成熟期에 들어가면 標準화가 進行되는 가운데 製品革新보다는 工程革新이 重要하게 되고 費用極小化를 為한 大規模 投資 때문에 組織이 肥大化되는 가운데 位階가 形成되고 專門化가 進行된다. 다시 말해서 製品의 life cycle中 流動期에서는 中小企業의 製品革新이 보다 有利하며 成熟期에 접어들수록 大企業의 工程革新이 보다 優勢해 진다는 것이다.

셋째, 오늘날 先進國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위 技術集約的新企業은 中小企業이 主軸을 이루고 있는 點이다. 이러한 中小企業은 急進의 인 技術革新을 通해 새로운 核心技術要素를 開發해 내거나 새로운 應用技術을 企業化 함으로서 技術革新을 主導하고 있으며 主로 電子用機器, 國療用機器 및 精密化學等 高技術 分野에 進出하고 있다.^{註2)}

넷째, 中小企業의 技術革新에 對한 寄與度는 產業別로 相異하기 때문에 一義의 으로 斷定할 수 없으나 新產業이나 專門的 技術이 要求되는 高度加工產業일수록 中小企業의 技術革新이 活發하다는 것이다.例컨대 美國의 경우 반도체, 마이크로 프로세서, 遺傳工學等 尖端技術 產業

에서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이 技術革新을 主導하고 있으며 아울러 產業社會가 脫工業化 社會로 移行됨에 따라 새로운 サービス型 產業이 나타나고 있어 中小企業에게 새로운 市場을 提供하고 있다. 컴퓨터 및 通信機器의 應用, 醫療器, 雷射用器等 新規 서비스 產業에서는 消費者들의 慾求가 多樣하고 이에 따라 高度의 應用技術이 必要하기 때문에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이 市場創出의 技術革新에 있어 主導的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한편 電子, 精密機械工業과 같이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競爭的關係에 있는 產業에서도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은 오랜期間동안 經驗과 蓄積된 技術을 바탕으로하여 專門의 인 製品을 開發함으로서 競爭的 優位를 享有하는 가운데 市場變化에 能動的으로 對應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技術革新에 있어 中小企業이 重要한 役割을 遂行할 수 있는 까닭은 中小企業組織이 가지는 柔軟性과 伸縮性에 基因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大企業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註3)}

첫째, 中小企業은 需要者와 긴밀한 接觸을 가지면서 特定技術分野에 蓄積된 專門技術 能力を 保有하고 있기 때문에 市場需要 및 技術의 變化에 迅速하고 効率的으로 對處할 수 있다.

둘째, 中小企業의 經營者, 特히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의 經營者들은 能動的인 經營者이기 때문에 새로운 機會의 捕促 및 活用에 機敏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官僚的인 管理 절차를 要하는 大企業에서는 組織構成員들의 革新的氣質이 抹殺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企業內部에서 組織을 効率的으로 運營

〈表 3〉 日本의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技術開發 成長率 比較('80)

| 成長率 | 5%未満 | 5~10% | 11~20% | 21~30% | 31~50% | 51~70% | 71~100% |
|------|------|-------|--------|--------|--------|--------|---------|
| 中小企業 | 4.5 | 19.2 | 15.4 | 13.2 | 16.3 | 12.0 | 8.4 |
| 大企業 | 44.5 | 23.1 | 9.4 | 6.8 | 6.5 | 6.5 | 2.6 |

註：成功率은 技術開發目標로 選定된 것이 實用化에 成功한 比率임

資料：日本 中小企業廳, 中小製造業技術開發實態調查, 1980.

하려면 組織構成員間에 圓滑한 意思疏通이 必要한데 中小企業에서는 非公式的인 對人關係를 通해 意思疏通이 보다 活發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은 市場指向的인 性格이 強하기 때문에 技術開發에 따른 不確實性을 減少시키는 傾向이 있다. 그리하여 中小企業에서의 其術革新의 成功率은 大企業에 比하여 높은 便이다. 〈表 3〉에서 보듯이 日本에서 技術開發 成功率이 70~100%의 確率을 보이는 경우 中小企業은 8.4%인데 比하여 大企業은 2.6%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中小企業은 技術革新에 있어 人力, 資金, 情報蒐集面에서 隘路要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大企業보다 不利한 點도 많다. 첫째, 中小企業은 專門人力確保에 있어 困難을 겪는다. 急進的인 技術革新을 遂行하려면 優秀한 技術人力이 必要한 바 別途의 研究開發組織도 없고 研究開發豫算이 不足한 中小企業으로서는 資質 있는 技術人力을 確保하기가 困難한 實情이다.

둘째, 情報蒐集 및 企劃能力이 不足하다는 點이다. 中小企業이 技術開發活動을 遂行하기 為해서는 市場需要, 源泉技術 및 外國의 技術導入이나 技術情報의 蒐集해서 分析한後 이를 土台로 하여 계획을 樹立하는 것이 必要하지만 中小企業은 이에 必要한 費用을 負擔하거나 專門要員을 確保하기가 困難하기 때문에 情報蒐集과 分析 및 企劃能力面에서 大企業에 比하여 뒤떨어지게 된다.

셋째, 資金問題로서 革新的인 製品을 開發하여 販賣하는데도 相當한 危險負擔 및 費用이 隨伴되는데 中小企業에서는 그러한 危險을 分散시키거나 所要資金을 調達할 能力이 不足한 경우가 많다.

다. 技術集約的 中小企業과 技術革新

최근 先進國에서는 經濟不況의 打開策으로 技術集約的 新企業에 對한 關心이 高潮되는 가운데 많은 國家에서 이를 積極 育成하고자 벤처캐피탈을 供給하는 等 集中的인 努力を 기울이고 있다. 技術集約的 新企業은 美國을 中心으

로 主要 先進國에서 繢出하고 있으며 그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工學的 技術을 保有한 소수의 創業者 그룹이 主導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들 創業者들은 高學力 所持者로서 應用開發 經驗이 많아 技術을 市場條件에 直結시킬 수 있는 能力を 保有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技術集約的 新企業은 아이디어 形成에서 始作하여 企業化로 連結되는 技術革新 過程을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들의 生成과 技術革新活動은 大學研究機關 및 既存企業에서 必要한 情報를 얻어내거나 高級専門人力을 流入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 技術集約的 派生率이 높은 分野들은 大體로 急成長產業, 技術變化가 急速한 產業, 資本集約度가 낮고 規模의 經濟가 작은 產業들이다.^{註 4)}

이와같이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의 生成發展이 특히 두드러진 나라는 美國이며 여기에는 美國特有의 社會的 風土가 決定的인 役割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美國에서는 企業家 精神을 讚揚하는 態度가 普遍化되어 있기 때문에 技術創業에 有利한 風土가 造成되어 있으며 벤처캐피탈會社도 잘 發達된 이른바 場外去來市場(over-the-counter market)을 通해서 莫大한 株式資金을 調達하여 벤처비지니스에게 必要한 資金을 供給하는 것이 가능하다.

美國에서 벤처캐피탈은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의 胎動과 發展에 큰 役割을 하였으며 現在도 銀行의 벤처캐피탈 子會社를 除外 하더라도 約 300個에 達하는 民間벤처 캐피탈 會社들이 活動하고 있다. (美國에는 이밖에도 中小企業廳傘下에 305個에 達하는 中소기업 投資會社,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가 있다)

이들 會社의 投資對象優先順位는 〈表 4〉에서 보듯이 通信機器, 醫療機器, 컴퓨터等 技術革新의 빈도가 높으면서 장래의 成長潛在力이 매우 큰 產業에 두어지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것처럼 技術集約的 中小企

〈表 4〉 美國벤처캐피탈會社들의 優先投資分野

| 優先投資 分野 | 該當會社數 | % |
|--------------|-------|------|
| 1. 通信機器 | 193 | 58.0 |
| 2. 에너지 | 178 | 53.5 |
| 3. 醫療機器 | 166 | 49.8 |
| 4. 컴퓨터 | 160 | 48.0 |
| 5. 컴퓨터 周邊機器 | 154 | 46.2 |
| 6. Data 通信 | 150 | 45.0 |
| 7. 自動化設備 | 137 | 41.1 |
| 8. 特許製品 | 124 | 37.2 |
| 9. 石油, Gas開發 | 121 | 36.3 |
| 10. 放送 | 110 | 33.0 |
| 11. I. C. | 108 | 32.4 |
| 12. 工作機械 | 103 | 30.9 |

資料：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벤처캐피탈 1984.

業이 強調되는 까닭은 단지 技術革新에 對한 寄與度가 높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은 既存의 大企業에 比해 雇傭創出이나 輸出增大者에 있어 두드러진 役割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美國企業들을 成熟企業革新的企業 技術集約的新企業으로 區分할 경우 〈表 5〉에서 보듯이 賣出 및 雇傭成長率面에서 技術集約的新企業은 革新的企業이나 成熟企業을 壓倒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에서도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의 經營成果는 一般中小企業에 比해 越等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韓國科學財團이 技術集約的인 中

〈表 5〉 美國의 企業類型別績出 및 雇傭成長率比較

| 企業類型 成長率 (1945~75) | 成熟企業 | 革新的企業 | 技術集約的 新企業 |
|--------------------------|------|-------|--------------|
| 賣出成長率 | 7.8 | 16.3 | 42.5 |
| 雇傭成長率 | 1.9 | 10.8 | 40.7 |

資料：中小企業銀行 調査部編, Small Business and Innovation, 1983, p. 94.

小企業体를 調査한 結果 1980年에서 1982年까지 賣出額 成長率은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이 53.9%, 一般中小企業이 32.4%이며 雇傭創出面에서도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은 年平均 42.7%의 높은 成長率을 보이고 있다.^{註 5)}

2. 技術開發 支援制度 現況과 問題點

우리 나라에서도 1980年代에 들어 技術革新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政府의 產業支援 政策도 技術開發에 對한 支援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轉換되고 있다. 이것은 過去 우리나라의 高度成長이 主로 資本이나 勞動과 같은 物의 生產要素의 投入에 依存해서 이루어졌고 技術進步의 役割은 微弱했으며 따라서 限定된 資源을 非効率的으로 使用한 點에 反省이며 80年代의 低速成長時代를 맞이하여 技術革新을 通한 產業의 競爭力 強化가 經濟成長의 關鍵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技術開發支援制度는 政策手段別로 볼 때 크게 租稅支援制度, 資金支援制度, 政府購買制度, 新技術開發製品保護制度 및 其他制度로 區分될 수 있다. 이러한 政策手段은 企業의 技術開發을 促進하기 爲한 直接的인 支援制度이며 工業所有權制度, 國產化促進政策, 輸入自由化政策等 市場需要에 影響을 주는 間接的인 支援制度로 大別할 수 있다. 이中에서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에 가장 큰 影響力を 가지고 있는 政策手段이 租稅支援 및 資金支援과 關聯된 政策이라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紙面의 制約으로 租稅支援制度를 考察하고 나머지 部內에 對하여는 다음 機會에 詳論키로 한다.

가. 租稅支援制度現況

技術開發과 관련된 租稅支援制度는 研究開發活動뿐만 아니라 그 成果를 保障하는 市場需要 確保까지도 支援對象으로 하고 있다. 技術開發에 對한 租稅支援의 制度는 1972年에 技術開發促進法으로부터 本格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技術開發促進法은 技術開發 準備金制度의 運營, 新技術企業화에 對한 減稅措置, 技術開發

〈表 6〉 段階別·支援手段別 支援制度 現況

| 段階別 支援手段別 | 研究開発段階 | 企業化段階 | 市場進出段階 |
|--------------|---|--|--|
| 租 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技術開発準備金制度 • 技術 및 人力開發稅額控除制度 • 企業附設研究所用 不動產에 對한 地方稅免除制度 • 研究用物品의 關稅輕減制度 • 研究用見品 特消稅免除 • 外國人 技術者에 對한 所得稅免除制度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技術企業化投資稅額控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技術開發 先導物品에 對한 特消稅 減免制度 • 技術用役事業所得控除 |
| 資 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研究開發費融資 및 補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技術企業化投融資 | |
| 政府購買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技術開發費의 原價反映 • 新製品開發者에 對한 入札資格賦與 • 綜合落札制度 |
| 其 他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研究要員兵役特例制度 | | |

에 對한 資金支援等이 있다.

同法은 그後 수차례 결쳐 改正되었는바 1977年 第1次 改正是 準備金制度와 資金支援制度에 對한 擴充 國產新技術製品 製造者에 대한 保護, 產業技術研究組合의 設立等의 條項을 追加하였으며 1982年 第2次 改正是 核心產業 技術을 重點的으로 開發하기 為하여 特定研究 開發事業에 關한 規定을 新設하였다.

技術用役을 支援하기 為하여 技術用役育成法이 1973年 制定되어 1976年 改正되었다. 1980年代는 租減法의 改正이 數次에 결쳐 있었는바 各種의 技術開發支援制度가 新設되었다. 1981年에는 技術 및 人力開發費稅額控除制度와 企業附設研究所用 不動產에 對한 所得稅額 免除制度等이 新設되었으며 技術開發先導物品에 대한 特別消費稅의 稽正세율 適用條項도 신설되었다. 1982年에는 研究用見品에 對한 特消稅免除制度와 關稅輕減조치가 新設되었다. 1986年에는 租減法 適用時限을 1986年末에서 1991年으로 延長하고 中小企業創業支援을 為하여 創業

한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에 對하여 所得稅, 法人稅의 3年間 100%, 그후 2年間 50%를 免除하는 等 支援을 強化하고 中小企業 創業 投資會社 또는 新技術事業 金融會社에 對하여는 株式讓渡差益에 對해 法人稅을 免除토록 하였다. 또한 技術開發 準備金의 損金算入額을 1%내지 1.5%에서 1.5%내지 2%로 上向調整하고 特히 中小企業에 對하여는 여기에 500萬원을 追加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技術人力開發費 增加支出分에 對하여는 20% 稅額控除를 하고 4年間 移越控除를 許容하였다.

(1) 技術開發 準備金 制度

技術開發 準備金 制度는 1973年부터 施行되어 우리나라 技術開發 支援制度의 嘴矢를 이루고 있으며 5차례의 改正을 거쳐 그 問題點이 補完되었다. 同制度의 目的是 企業들이 장차 技術開發을 為하여 所要資金을 每年 積立토록 하여 積立金에 대한 損金算入을 許容함으로써 企業들의 技術開發 資金의 積立과 그 利用을 促進하기 僞한 것이다. 同準備金을 積立할 수 있는

〈表 7〉 技術開發 準備金과 余他分野 準備金과의 比較

| 區 分 | 技術開發準備金 | 投資損失準備金 | 海外市場開拓準備金 | 中小企業投資準備金 |
|-------------|---|-------------------------------------|-------------|-------------------|
| 積立限度 | 收入金額 : 1.5%, 2% 所得金額 20%, 30% 擇一 | 外貨輸入金額 : 1% 所得金額 50% 中 選 은 金額 | 外貨輸入金額 : 1% | 資產評價額 : 15% |
| 使用期間 | 4 年 | 5 年 | 5 年 | 4 年 |
| 費用發生時 還入 | 使用期間內 同準備 金과 먼저 相計 | 使用期間後 3年間均 等還入 | | 使用期間後 3年間均 等還入 |
| 加 算 稅 | 21.9% | 徵 舉 | 徵 舉 | 21.9% |

企業은 製造業, 鑛業, 建設業, 技術用役業, 電子計算組織을 利用한 開發技術 및 情報處理 等, 軍需物資의 加工, 組立, 整備 및 研究開發事業에 從事하는 企業들이며 積立限度는 所得金額의 20% (技術集約產業 30%), 収入金額의 1.5% (技術集約產業 2%) 中 擇一할 수 있고 積立金은 4年間 使用하며 用途 및 未使用額은 益金에 算入되는 同時に 100원에 對해 日邊 6원 (年 21.9% 金利相當)으로 計算된 金額을 追徵한다. 技術開發 準備金을 余他의 準備金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同準備金의 積立은 租稅支援의 綜合 限度制 適用을 받기 때문에 租減法에 規定되어 있는 技術開發 以外의 目的을 為한 特別償却 및 諸準備金 制度와 함께 適用을 받는다. 그리하여 技術開發 準備金을 포함하여 所得控除의 對象이 되는 損金算入의 범주는 總所得金額의 50% 限度内에서 損金에 算入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制度는 施行 前期에 比하여 最近의 準備金 積立이 增加하고 있는데 이 現象은 企業의 技術開發 投資增加 추세와 積立限度擴大, 使用期間延長等 制度改善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同制度를 利用할 수 있는 對象企業中 實際 積立하는 企業은 매우 低調한 實情이다.

最近 技術開發 準備金 制度의 改善에 關한 意見이 社會各層에서 提起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表 8〉 年度別 技術開發 準備金 積立使用 現況
(單位 : 億원)

| 事業年度 | 業체數 (個) | 積立金額 | 使用金額 | 使用率 (%) |
|------|------------|-------|------|------------|
| 1973 | 80 | 31 | 7 | 22 |
| 1974 | 60 | 29 | 7 | 24 |
| 1975 | 67 | 45 | 13 | 28 |
| 1976 | 49 | 58 | 34 | 58 |
| 1977 | 71 | 83 | 73 | 88 |
| 1978 | 153 | 305 | 251 | 82 |
| 1979 | 131 | 285 | 252 | 89 |
| 1980 | 104 | 188 | 157 | 83 |
| 1981 | 128 | 330 | 294 | 92 |
| 1982 | 160 | 565 | | |
| 1983 | 203 | 1,293 | | |

資料 : 科技處, '84科學技術年鑑

同 準備金 制度를 廢止하자는 意見도 있다.^{註 6)}

(2) 技術 및 人力開發費에 對한 稅額控除

이 制度는 1981年末 新設된 것으로 技術開發 準備金을 積立할 수 있는 產業에 從事하는 企業들이 技術 및 人力開發費을 支出할 경우 同支出金額의 10%를 該當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稅額控除를 하는 것이다. 稅額控除의 適用對象이 되는 使用範圍는 技術開發 準備金과 同一하며 다만 그範圍가 보다 細分化 되어 있

〈表 9〉 租稅支援 類型別 綜合限度

| 類型別 | 綜合限度 | 適用對象 | 備考 |
|-------------------|----------------------------------|--|----------------|
| 1. 各種準備金 및 特別減價償却 | 準備金 또는 特別償却을 損金에 算入하기前 所得金額의 50% | 技術開發準備金, 新技術企業化事業用資產等 租減法上의 모든 準備金 및 特別減價償却費 | 綜合限度 超過分은 益金算入 |
| 2. 所得控除 | 所得控除金額을 計上하기前 所得金額의 50% | 租減法上 모든 所得控除 | 限度超過額은 削除 |
| 3. 稅額控除 | 算出稅額의 30% | 技術 및 人力開發稅額控除等 租減法上 모든 稅額 控除 | 限度超過額은 移越控除 |

다. 먼저 技術開發費에 있어서는 研究開發과 關聯된 人件費, 材料費, 試作品 및 中間試驗에 必要한 經費를 포함하는 自體開發費, 特定研究機關이나 產業技術研究組合 및 大學等에 對한 委託開發費, 特許權 및 新發明技術의 獨創經費, 技術情報費 等이 支援對策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同 制度運用에 있어서 制約要因은 다음과 같다. 즉 各種 租稅控除의 合計額이 所得稅 또는 法人稅 算出額의 30%를 超過하지 못하는點等을 規定한 租稅支援 綜合限度制는 技術開發投資 增大를 為한 租稅減免을 포함함 으로서 實質的인 技術開發投資에 對한 投資控除誘因을 制約, 技術開發投資促進效果가 半減되고 있다.

(3) 新技術企業化 事業等에 對한 投資控除

이制度는 技術開發과 關聯된 施設投資를 促進하기 為한 것으로 研究開發成果를 土台로 新技術企業化投資를 支援하는 경우와 新技術開發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로 區分할 수 있다. 詳論은 省略하기로 한다.

(4) 外國人技術者에 對한 所得稅 免除

이制度는 從來外國人 投資企業에만 適用되던 것을 内國人 業체에서 技術指導等을 為해 球무하는 外國人 技術者에 對해서도 所得稅를 5年間 免除할 수 있도록 擴大한 制度로 1981年 末부터 新設되어 先進技術의 形轉을 支援하고 있다. 詳論은 省略하겠다.

(5) 技術開發機關에 對한 租稅支援

앞에서 언급한 4가지 制度는 技術開發專擔組織의 有無에 關係없이 企業의 技術開發 活動에 對한 租稅支援을 規定한 것이다. 여기서는 技術開發專擔機關인 企業附設研究所와 產業技術研究組合에 適用되는 租稅支援을 簡單히 考察키로 한다.

첫째, 研究開發用品에 對한 關稅輕減制度가 있다. 이것은 自然系 學士以上 研究員을 5人以上 常時 保有하고 있는 企業附設研究所나 產業技術研究組合法에 依하여 設立된 產業技術研究組合이 輸入하는 研究開發品中 國產이 困難한 品目에 對해 關稅를 輕減할 수 있으며 輕減率은 該當品目的 實行關稅率이 20% 以下이면 該當 關稅額의 65%를 減免하고 實行關稅率이 20%를 超過하면 70%를 減免해 주고 있다. 둘째 研究所用 不動產에 對한 地方稅 免除制度가 있다. 이것은 企業들의 附設研究所 設立과 職業訓練施設의 設立을 促進하기 為한 것으로 이들構造物中 建物과 土地에 對하여 取得稅 登錄稅 및 財產稅等의 地方稅를 免除해 주는 制度이다. 다만 土地의 경우 建物의 바닥面積을 基準으로 職業訓練 施設은 10倍, 企業附設研究所는 7倍 以内로 制限된다.

셋째, 研究用 品目에 對한 特消稅免除制度가 있다. 企業附設研究所나 產業技術研究組

合이 新製品 또는 新技術을 開發하기 為한 試驗用 見本品을 輸入하는 경우 特消稅를 免除해 주는 制度이다.

나. 租稅支援制度의 問題點

現行 技術開發 支援 租稅制度는 名目上 大企業과 中小企業間 差等을 두고있지 않으며 制度自体가 技術開發을 遂行하는 業체만을 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組織上 正確한 技術開發費를 計上하기 힘든 中小企業에게는 매우 不利하게 作用하고 있으며 制度 運營에서도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을 沮害하는 要因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指適할 수 있는 것이 中小企業에 있어 同制度의 活用이 매우 不振하다는 點이다.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가 技術集約的 中小企業 91개社를 對象으로 調查한 結果에 依하면 調查對象業體中 技術開發 準備金을 積立하여 使用한 業體의 比重은 20.9%로 나타나고, 外國人技術者에 對한 所得稅 免除가 14.3%, 稅額控除가 11%順이었고 余他 制度의 利用 實績은 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註 7)}

이와같이 中小企業에 있어 現行 租稅支援 制度의 利用 實績이 不振한 것은 制度自体의 問題點도 있으며 弘報活動 不足에도 基因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指適한바와 같이 現行 租稅制度는 技術開發 以外에도 重要產業, 輸出等 많은 活動에 對해 廣範圍한 支援을 規定하고 있으며 企業들은 技術開發費를 除外하고도 各種 減免額이 이미 綜合限度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技術開發費 減免對象에서 除外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租稅支援 義務를 이행하기 為한 事後管理도 매우 複雜하기 때문에 制度利用을 沮害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例컨대 技術 및 人力開發費 控除를 비롯해 稅額 및 所得控除의 對象이 되는 여러 制度들은 控除된 金額을 企業合理化 積立金으로 積立하여 資本轉入이나 移越欠損金 补填等에 充當해야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控除받은 稅額에 年21.9%에 該當하는 追徵金을 負擔하도록 되어 있다.

3. 結語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을 促進하기 為하여는 中小企業의 特性을 감안하여 技術開發에 對한 能動的 態度를 助長하고 이러한 努力を 도와주는 技術支援機能을 中長期 對策에 立脚하여 強化토록 하는 革新指向的 社會的 風土가 造成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을 促進하고 各種 政策手段이 活用되면 그支援效果가 極大化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現行 支援制度의 改善方案을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技術開發에 對한 支援制度의 優先順位를 賦與해야 한다는 點이다. 우리나라 產業支援稅制 및 金融制度는 政策目的에 따라 技術開發뿐만 아니라 輸出, 投資, 重要產業等 多樣한 分野를 支援對象으로 하고 있다. 먼저 租稅面에서 볼때 現行制度는 綜合限度制와 重複適用排除를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技術開發을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技術開發을 支援하면서도 그 支援效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短點이 있다. 이와같은 規定때문에 企業들은 技術開發活動을 余他活動에 比해 選好하지 않기 때문이다. 現行 金融機關 總貸出額中 技術開發 關聯資金의 比重은 0.38%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에서도 알 수 있듯이 技術開發資金의 優先順位는 매우 낮은 便이다. 우리나라 產業政策의 基本方向이 技術革新에 있고 直接的인 產業支援手段을 漸進的으로 縮少해 가는 方向이라면 現在와 같이 多樣한 部門을 支援對象으로 하는 것보다는 優先順位에 立脚하여 技術開發部門에 對한 支援을 強化해야 하며 他部門에 對한 支援은 과감히 縮少해야 할것이다. 특히 技術開發活動은 波及效果가 다른 活動에 比해 大端히 커 社會的 利益에도 크게 寄與하고 있기 때문에 支援의 優先順位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에 對한 支援도 이러한 基本方向下에서 檢討되고 強化되어야 할것이다.

둘째 技術開發過程의 연계성을 強化하여 支援效果를 極大化하여야 한다. 技術革新의 過程은

아이디어形成, 研究開發, 企業化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段階別로 適正한 所要資金이 配分되도록 支援하여야 그 效果가 極大化 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에서 技術開發에 對한 資金支援은 企業化段階에 지나치게 偏重되어 있다. 예컨대 特定研究開發事業資金은 주로 研究開發段階에 置重하고 金融資金은 企業化段階에 置重하여 資金供給을 分擔함이 效率의 일 것이다. 끝으로 現行支援制度中 앞에서 言及한 租稅支援制度의 改善方向을 간단히 言及하고 마치기로 하겠다.

現行 技術開發租稅支援制度는 全體的으로 볼 때 中小企業이 實質的인 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配慮하고 있지 않으며, 租稅誘因效果가 크지 않고, 事後管理절차가 複雜하다는 點이다.

첫째, 中小企業이 實質的인 受惠者가 될 수 있도록 配慮되어야 한다. 現行 租稅支援制度는 技術開發行爲를 支援基準으로 삼기 때문에 表面上 中小企業도 支援對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實質的인 支援對象은 技術開發投資를 事業計劃에 따라 組織的으로 遂行하는 業体에 局限되기 때문에 中小企業은 事實上 支援對象에서 除外되고 있다. 따라서 中小企業에 對한 技術開發支援稅制의 補強은 단순히 稅法改正에 依하여는 겉우기 어렵고 支援節次를 代行하는 專門的 審查機關이 設立되어 支援對象 費目別限度 및 支援節次에 關한 詳細한 諮問에 應한다면 中小企業의 稅制利用을 크게 促進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技術開發에 對한 綜合限度制를 撤廢하여야 한다. 詳細한 内容은 既述한바 있으므로 省略하기로 한다.

셋째, 技術開發準備金의 積立範圍를 一定比率에서 一定金額으로 代替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事後管理에 伸縮性을 賦與하여야

한다. 例를 들면 準備金 積立 申告時 準備金 明細書를 提出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支援範圍의 规定에 따른 當然한 措置로 볼 수 있으나 다만 4年間의 詳細한 事業計劃과 代金使用 計劃書의 提出을 要求하고 있어 企業들은 機密누설이나 그作成에 드는 時間 및 人力浪費 때문에 同制度의 利用을 거리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積立申告時 最少限의 必要書類만 提出토록 하고 代身 事後的으로 使用 實績報告時 具體的이고 正確한 資料提出을 義務化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註 1) W. T. Abernathy and J. M. Utterbeck, "Patterns of Industrial Innovation"

註 2) 曹圭河, 李基東譯, "日本中小企業의 技術革新" pp. 20~62.

註 3) R. Rothwell and W. Zegveld, "Innovations and the small and medium sized firm 1982" p. 45.

註 4) 中小企業銀行 調査部編, "Small Business and Innovation" pp. 94~95.

註 5) 科學財團, "中小企業의 技術開發能力向上 및 技術集約型 中小企業 育成對策 (1983. 7) p. 82.

註 6) 李元映 教授는 同準備金制度가 會計上의 納稅의 時期를 延期하는 장부정리上의 手段에 不過하고 다음과 같은 點에서 非效率의이라고 한다.

① 투자誘因效果가 적은점 ② 新規企業은 그 惠澤을 받을 수 없는點 ③ 그 惠澤이 名目利子率의 變動에 따라 달라진다는點 ④ 會計處理가 複雜하여 中小企業의 利用이 적은점. "研究開發投資와 稅制上의 誘因政策(國國開發研究院, 1984. 10) pp. 82~89.

註 7)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技術開發 支援政策 및 隘路要因 分析", 1984. 5.